

추가세액계산내역서 [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]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1. 신고인 정보

① 사업자등록번호		② 법인명(상호)	
③ 전화번호	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대표자 성명		⑥ 신고인 유형	최종 모기업 [] 중간 모기업 [] 부분소유 모기업 [] 그 외 구성기업 []
⑦ 소재지			
⑧ 사업연도	. . . ~ . . .	⑨ 수시부과기간	. . . ~ . . .

2.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

3.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

⑩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않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[]

상 호	사업자등록번호	소유지분 비율		현금 및 현금성 자산금액		⑮ 배분비율	⑯ 추가세액 배분액
		⑪ 소유지분 비율	⑫ 소유지분 비율 비중	⑬ 현금및현금성 자산금액	⑭ 현금및현금성 자산금액 비중		
합	계						

4. 신고 대리인 정보

⑰ 법인명(상호)	⑱ 사업자등록번호	⑲ 담당자 성명	⑳ 전화번호	㉑ 전자우편주소
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

신고인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84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·제45조의2·제45조의3에 따라 위
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
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법인명) (인)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수수료 없음

작성 방법

1. ①사업자등록번호란, ②법인명(상호)란, ③전화번호란, ④전자우편주소란,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⑥: 신고인이 최종모기업,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"√" 표시를 하고,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'그 외 구성기업'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3. ⑧: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4. ⑨: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사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 다만,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적지 않습니다.
5. 2.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란은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의 2.(1) 또는 (2)에서의 국내배분액을 적습니다.
6. ⑩: 신고구성기업이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내 구성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"√" 표시합니다. 다만,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귀속 사업연도의 신고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납부되지 않았고,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.
6. ⑪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최종모기업인 국내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은 '1'로 적습니다.
7. ⑫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을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.
8. ⑬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 금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
9. ⑭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 금액을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 금액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.
10. ⑮: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5조의2에 따라 배분비율(⑩×50% + ⑭×50%)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
11. ⑯: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2.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⑮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2. ⑰~㉔: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.